

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1996.6.20>

화약류의 환산기준(제6조관련)

화약 및 화공품의 종류	폭약 1톤으로 환산하는 수량
화 약	2톤
실탄 또는 공포탄	200만개
신관 또는 화관	5만개
총용뇌관	250만개
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	100만개
신호뇌관	25만개
도폭선	50킬로미터
미진동파쇄기	5만개
그 밖의 화공품	당해 화공품의 원료가 되는 화약 2톤 또는 폭약 1톤